

##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

사 건 2000가합0000 손해배상(기)

원 고 000

피 고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송달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였으므로 연서하여 신고합니다.

## 다 음

1. 송달 받을 장소 신고

원고 000

주소: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송달장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2. 송달 영수인 신고

원고의 송달영수인: ◎◎◎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2000. 0. 0.

위 원고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 송달영수인 ◎◎◎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제○민사부 귀중

제출법원	소송계속법원			www.klac.or.k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민사소송법 제1843	<u>조</u>
기 타	당사자·법정대리인 또는 안의 장소로 한정)를 송			
	고,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.	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송절차 >> 송달 및 재판